

포항시 법률고문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2월 5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, 포항시장
- 2)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- 3) 상정일자
 -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-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2. 5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정현 예산법무과장)

1) 개정이유

- 최근 전문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소송 증가에 따라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 및 행정의 복잡화에 따른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률고문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가. 법률고문 위촉 인원 수 조정(안 제2조)
 - 위촉 가능 인원수를 기존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
- 나.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제출 의무화
(안 제4조제4항, 별지 제1호서식~제2호서식)
- 다.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

3) 관련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-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행정의 다변화와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법률자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고문의 수를 기존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,
- 법률고문 증원을 통해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에 법률 고문 증원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다만, 매년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, 담당 부서에서는 법률자문 내용을 부서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,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